
**- 케냐 몸바사 신니알리 교량 건설 및
도로축 개선사업 -
예비 타당성조사 제안요청서**

2022. 9.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목 차

| | |
|-----------------------------|----|
| I. 제안 안내 | 1 |
| 1. 과업 개요 / 1 | |
| 2. 진행 일정 / 1 | |
| II. 제안 일반사항 | 2 |
| 1. 입찰 및 계약방법 / 2 | |
| 2. 입찰 공고 / 2 | |
| 3. 입찰 참가자격 / 3 | |
| 4. 입찰시 유의사항 / 3 | |
| 5. 최종낙찰자 유의사항 / 6 | |
| 6. 제안서 평가방법 / 11 | |
| III. 타당성조사 과업범위 | 12 |
| IV. 제안서 작성요령 | 19 |
| 붙임 1 : 제출서류목록 | 20 |
| 붙임 2 : 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기준 | 21 |

I. 제안 안내

1. 과업 개요

- 과업명 : 케냐 몸바사 신니알리 교량 건설 및 도로축 개선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0일
- 사업예산 : 금 1,000,000,000원 (부가세 포함)

2. 진행 일정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장소 : 조달청 e-발주시스템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기술제안서 및 관련 서류 등 (전자파일)
 - * 제출서류 목록은 붙임 1 참조
 -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후 우리 공사 요청 시 제안서, 발표자료, 서류파일 등을 발표일정에 따라 출력물로 제출할 수 있음

□ 가격입찰 (전자입찰서)

- 입찰기한 : “입찰공고”에 따름
- 입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별도 통보)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 기한 내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가격입찰)를 모두 제출하여야 입찰 유효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자에게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입찰자는 우리 공사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계약협상 : 협상 일정은 제안서 평가 후 협상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 문의처 :

- 사업문의 : 인프라사업실(02-6746-7369)
- 입찰, 계약문의 : 경영지원실 재무계약팀(02-6746-7462)

II.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
- 제안서의 평가 :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최종낙찰자 선정
 - 협상은 우리 공사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함
 - * 기술 및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 상위자를,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해 최종낙찰자를 선정하게 되면 이후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진행하지 아니함
- ※ 협상금액 등의 결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2. 입찰공고

-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홈페이지 (<http://www.kindkorea.or.kr>)(정보공개 - 입찰정보) 공고
- 공고기간 : “입찰공고”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동시충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서식4)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입찰 시 유의사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우리 공사에 제출해야 함
 -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 일자이어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우리 공사는 입찰보증금을 몰수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16호, 2022.7.1. 시행)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기획재정부, 2022.7.1. 시행) 따라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을 10% 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표준협정서(1부)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르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동 규정 숙지

□ 계약보증금의 납부

-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5/100(한시적 특례에 따라 75/1,00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우리 공사에 제출해야 함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내용을 명료하게 작성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할 수 있다” 등 추상적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청렴 계약이행 준수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대표자가 각각 제출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제출된 문서·서류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함
-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우리 공사의 용역계약일반조건, 본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음
 - * 대리인은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 신분확인 서류 지참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 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입찰공고문 및 본 제안요청서 등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5. 최종낙찰자 유의사항

□ 과업의 일반원칙

- 자료 활용
 -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
- 과업 수행원칙
 - 최종낙찰자(이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상 기업실사, 재무 및 기술 타당성 분석, 법률 검토 등을 외부전문기관(현지업체 포함)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 위탁금액, 위탁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
 -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 외부전문기관 포함)가 부담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여야 함

○ 과업의 변경

-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일반조건

-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영수증 등)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

○ 특별조건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
- ※ 우리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을 사업제안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변경할 경우, 기존 인력 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성과물 작성

-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
-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납품해야 함
-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 양식, 활자크기,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결정해야 함
- 공정보고, 현지조사,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자로부터 <사업제안자 수행> 과업(해당 시)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과업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은 감독관 및 사업제안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제안자 수행> 과업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자가 책임을 지고 수행

○ 기 타

-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
-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

□ 과업수행방법

○ 전문가 자문

- 본 과업내용 관련 필요시, 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전, 최종보고서 제출 전 등 자문계획(자문회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

○ 현지조사 및 협상

- 대상사업의 기업실사, 재무 및 기술 타당성 분석, 법률 검토 등의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 조사자(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
-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부서에서 현지(케냐) 중간보고회 또는 최종보고회 시행 결정시, 현지 보고회 개최를 실시하여야 함.
-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
 - 매월말 공정회의를 실시하며, 매월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 보고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함

□ 과업성과품 제출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참여자 명단,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10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중간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 단,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20부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종보고서,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수정보고서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5개월 이내에 추정수입 및 운영비 추정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우리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수정 보고서, 수정 참고자료,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보안대책

-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보안업무규칙 제54조(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 각서(별첨)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 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 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분만 생산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

6.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평가는 우리 공사의 내부 지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평가분야별 배점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가격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임

□ 낙찰자 선정

- 낙찰자(협상적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어야 함

□ 평가방법 및 기준

- 붙임 2. **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 기준** 참조

Ⅲ. 타당성조사 과업범위

1. 과업의 개요

□ 과업명 : 케냐 몸바사 신니알리 교량 건설 및 도로축 개선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 과업목적

- 본 사업은 케냐의 제2도시이며, 아프리카 동부 최대 규모의 항구가 위치한 몸바사주의 중심업무 지구가 위치한 몸바사 섬과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는 내륙도시인 니알리를 연결하는 제3니알리 교량 건설과 연결되는 도로축 개선사업으로, 왕복 4차로의 교량과 연결도로 건설 그리고 연결되는 기존 도로축의 교통혼잡 개선사업(확장, 도류화, ITS)을 포함하는 민관협력 (PPP) 사업임
 - 케냐 정부 산하 “Kenya Urban Roads Authority”에서는 몸바사 제2니알리 교량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Pre-Feasibility Study)를 외부 컨설팅사 *Deloitte를 통해 2015년 7월에 완료하여, 정부공모 PPP사업으로 추진되다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임.
 - 우리공사에서는 KURA로부터 제3니알리교량에 대한 타당성조사 추진관련 공식서한을 받아서 본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제2니알리교량의 입찰절차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와 케냐의 관계부서 (KURA, PPP청 등)의 협의결과에 따라 분석범위와 후보 노선군 대상을 변경 결정할 수 있음.
 - 케냐 정부에서는 몸바사의 섬과 내륙을 횡단하는 교통량이 제2교량 건설 이후에도 도로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여, 제3교량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공식 인정한 것이며, 국내 기업에서도 본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 케냐 정부에서 실시한 제2니알리 교량 예비타당성조사(Pre-F/S) 및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에 대한 사업 환경 및 기술 분야, 재무 분야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PPP방식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 및 향후 PPP사업 제안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 과업내용 (구체적인 과업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할 것)

1) 사업 환경 분석

- 사업 대상 국가 분석
- 도로 인프라(교량 포함) 분석
 - 사업 대상국의 도로 인프라 개발 계획
 - 사업 대상지 주변의 도로 인프라 현황
- PPP 사업 추진 절차
 - PPP 사업 추진 기관, 절차 및 사례
 - 케냐 PIIP(Privately Initiated Investment Proposal)와 PPP 사업 추진절차 및 사례
- 유사/선행사업 사례 분석
 - 도로, 터널, 교량 등 인프라 개발사업 사례 분석
(개요, 추진 경과, 자금조달 방식 등)
 - 외국기업 단독 개발, 외국기업과 로컬기업의 JV개발 등 사례 분석

2) 예비타당성 조사(Pre-F/S) 보고서 분석

- 인근사업이며, 대상국에서 기 완료한 “제2니알리교량 예비타당성 조사 (Pre-F/S) 보고서*”의 전반적인 검토
 - 문제점, 개선 또는 보완사항 분석
 - 주요 기술사항의 적정성 확인 (예: 노선 계획)
 - 교통수요 분석기법 적용방안 검토 및 관련 자료 입수
 - 교량 공법, 설계, 지반조사 등 관련 자료 분석 및 적정성 검토
 - 주요 관련 근거의 업데이트 등
- * Pre-Feasibility Study of 2nd Nyali Bridge in Mombasa County PPP Project (July 2015)

3) 기술 분야 타당성 분석

□ 현황 조사

-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업대상지 인근 교통량 및 교통혼잡도 조사
- 주요 간선도로 교통량, 교통 혼잡도 및 도로 현황 조사
- 사업 대상지 토지 확보 방안 및 민원사항 검토
- 환경 및 기상 조건 검토를 통한 공사 가능일 산정
- 사업대상지의 측량 및 지반조사를 통한 공사 시행 여건 검토
 - 측량조사: 노선 전구간 지형측량, 하천구간 수심측량
 - 지반조사: 하천구간 및 육상구간 시추조사를 통한 지반조사 수행

(하천 또는 양안 교대부 2공 이상 실시)

- 하천 구간의 시추공의 심도는 기반암을 확인할 수 있는 깊이 또는 150m까지 시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할 수 있음
- 현지 기상 조건, COVID-19으로 인한 한국과 사업 대상국의 여행 자제 또는 금지 등 각종 변수를 고려하여 현황 조사가 지체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의 현지 사무소/지사 활용, 현지업체와의 협력 등 실현성 있는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특히, 중간보고 전까지 최적노선 선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교통혼잡도분석 및 후보노선에 대한 분석(교통 수요, 교량시공 여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또한 교통혼잡도 분석, 교통수요예측 등과 관련 해당 발주처에서 수용 가능한 방법과 수치의 제시가 가능하여야 함.

□ 몸바사 도시도로망 교통 혼잡도 및 장래수요 분석

- 교통 여건 조사 및 답사
 - 교통 관련 현황 파악 및 향후 전망 자료
(기존 도로망, 교통시설 계획, 인구, 차량 대수, 차종 등)
 - 현재 운행 중인 Ferry 요금 수준과 Willingness to pay의 비교 검토
 - 케냐 유료 도로 및 교량의 통행료와 비교 검토
- 사업 구간 장래 교통량의 적정 여부 판단
 - 발주처 제시 교통량 자료 수집 및 장래 교통량 분석
 - 신규 교량 건설에 따른 효과 및 기초보고서 작성
- 후보노선 교통혼잡도 분석 및 사업여건 검토
 - 후보노선 교통량 및 혼잡도 분석
 - 후보노선 장래 교통수요 분석
- 최적노선 교통혼잡도 분석 및 장래 교통수요 분석
 - 최적노선축 교통혼잡 개선사업 제시 및 최적노선 장래교통수요 분석

□ 교량형식 분석 및 컨셉 설계

- 발주처의 제2니알리 교량 F/S에서 제시된 교량형식에 대한 비교 분석 및 본사업에 적용될 교량 공법 비교안별 장단점 제시
 - 시공성, 경제성, 경관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ankable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가 산출되도록 최적안 도출
 - 조감도 작성시 항공사진, 컴퓨터 그래픽 등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 및 감독관의 요구수준에 맞게 feedback 과정을 거칠 수 있음

- 각 비교안별 조감도 작성 : 대안별 제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이미지)

- 최적안에 대한 컨셉 설계 (도면 제작 및 주요 물량 수량 산출)

□ 최적노선 도로축 개선방안 제시

- 기존 도로망 확장계획 및 컨셉 설계
- 통행료 수납 방식 및 수납시스템 설치 위치 검토
- 도로축 정비를 위한 도류화 방안 확장설계 적용 및 별도 사업 제시
- 도로축 혼잡완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ITS기법 적용방안 제시

□ 경제적 유발효과 분석 및 환경영향 검토

- 경제성 분석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유발효과
 - 일자리 창출, 고용유발효과 GDP 영향, 교통 혼잡도 개선, 교통혼잡비용 절감 효과 등 정량적 지표 제시
 - 케냐 및 몸바사 지역에 대한 직·간접 편익 관련 정성적 효과 제시
 - 경제적 유발효과 분석 및 수치 산정시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전문가 자문을 시행할 수 있음

- 환경사회영향 검토

- 정부수행 환경영향평가 사례 및 MDB 환경사회영향평가 기준 검토
- 국립공원 등 환경보전지역에 대한 영향검토 및 저감방안 제시
- MDB 환경기준 충족을 위한 추가 공사비 및 E&S 관련 비용 제시
- 토지보상, 이주 등 지원 규모 및 비용 규모 파악
- MDB 및 Local Standards로 공사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간 및 공사 가능 일수 비교 제시

※ MDB 참여 등을 위한 국제적 기준에 맞는 환경사회영향 검토 필요

□ 공사비용 산정

- 도로 설계, 건설 관련 현지 기준 검토 및 관련 자료 수집
- 현지업체(일반·전문 건설사) 현황 파악 및 사업수행 가능 범위 검토
- 도로 선형, 지장물 유무 검토
- 공사비 산출 기초자료 수집(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
- 사업 전 구간의 건설비용 산정(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부대비)
 - 교량 구간(하천공 포함)과 접속도로 구간별 비교
- 시공성 검토 및 공사수행 여건을 고려한 예상 공정계획 작성

□ 운영유지관리(O&M) 비용 산정

- 발주처 운영비용 분석자료 및 관리기준 자료 수집
 - 교량·도로 유지보수 기준/주기 검토
 - O&M 비용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
 - O&M 현지업체 현황 파악
 - 대상국 기후를 고려한 유지관리 특이사항
- 유료도로 운영현황 조사, 관리체계 및 시스템 조사
 - 통행료 수납 및 교통관리 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 유료도로 재난, 긴급구난 시스템 현황
- 현지 여건을 고려한 적정 운영유지관리(O&M) 산정

□ 종합분석

- 본 사업의 PPP 사업성을 위한 최적안 도출

4) 재무 분야 타당성 분석

□ 현황 조사

- 대상 사업과 관련된 주요 경제지표 및 산업정책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 사업 대상국 PPP 사업 관련 사례조사
 - 재정지원금 지급방식 및 규모 적정성 분석, 미지급 사례, 지급기준 등
- 사업 대상국 내·외 금융기관 동향 파악
- 현지 기상 조건, COVID-19으로 인한 한국과 사업 대상국의 여행 자제 또는 금지 등 각종 변수를 고려하여 현황 조사가 지체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의 현지 사무소/지사 활용, 현지업체와의 협력 등 실현성 있는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수립
 - 현지 금융기관 및 정책금융 조사
 - 사업 대상국 PPP 사업에 대한 다자개발은행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Bilateral Development Bank, 인프라펀드, 한국수출입은행(EDPF, EDCF) 등의 정책 및 적용 가능성 조사
 -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Availability Payment 적용 가능성 조사
 - 환율 변동 리스크 헷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
 - 사업 대상국 외환 자금 입출금 관련 제도 및 제한사항 조사

□ 재무적 타당성 분석

- 재무모델 작성
 - 사업의 주요 가정사항(물가상승률, 이자율, 환율) 및 현지 법인세, 부가세 등 주요 세제 반영된 재무모델 분석
- 경제성 및 재무 분석
 - 수익성지표 분석(NPV, ROE, ROI, 회수기간 등)
 - MRG, AP 방식에 따른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민감도) 분석
 - 시나리오 중에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와 같은 차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

□ 사업위험 분석 (Risk Analysis)

- 현지 리스크 조사 및 위험에 따른 리스크 헷지방안
 - 물가변동, 이자율변동, 운영·유지관리 위험, 정치·불가항력 위험 등
-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
 - 차입방식, 차입조건 상세화
 - 자금조달 시나리오 분석(재원조달 구조 변경, 재원별: 외국자본, 국내자본 등)
 -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사업비, 운영비, 이자율, 환율, 통행요금 등)

□ 종합분석

- 본 사업의 PPP 사업성을 위한 최적안 도출

5) 법률 분야 타당성 검토

□ 인프라 투자사업 환경 조사

- 기존 인프라 투자사업의 양허계약 등 주요 계약 적정성 검토 및 법률적 위험요인 도출·분석
- 정치적 위험, 계약불이행 등과 관련된 보험(국제기구 보증 포함) 검토
- 외국기업 SPV 및 O&M 법인 설립·운영사례 조사
- 용지·지장물 보상 및 거주민 이전 등 과련 문제점, 대응 방안 검토
- 현지 기상 조건, COVID-19으로 인한 한국과 사업 대상국의 여행 자제 또는 금지 등 각종 변수를 고려하여 케냐 PPP 관련 법·제도 검토/적용 등 현황 조사가 지체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의 현지 사무소/지사 활용, 현지업체와의 협력 등 실현성 있는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Availability Payment 방식의 도입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기존에 MRG, AP 방식이 시도되었던 인프라 투자사업 사례 또는 제도 도입과 관련된 조사
 - 특히, 교통부(MOT)가 추진한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 내용과 발주처(MOT), 관계기관(PPDA, MOF), 자문사(WB)의 입장 조사
 - 본 사업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

※ 발주처는 사업대상국의 기본법률, 투자환경관련 분석한 법률 및 제도 자료(2021~2022년 발간)를 참고로 제공할 예정임

□ 유사/선행 사업 사례 조사의 반영

- 우리 공사가 법률과 관련된 유사/선행 사례 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최종보고서 및 발표자료에 반영하여야 함

□ 종합분석

- 본 사업의 PPP 사업성을 위한 최적안 도출

IV. 제안서 작성 요령

1.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제안서 작성 양식<서식 2> 참조)
- 제안서는 A4용지 20페이지 내외(표지 및 목차 제외)로 아래한글로 작성 권장
 - * 글자크기 본문기준 13포인트, 글꼴 휴먼명조(영문글꼴 Times New Roman), 줄간격 160%, 좌우여백 25mm, 상하여백 각각 20mm, 15mm로 작성
 - * 단, 표 안의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사용 가능
- 제안서 본문 외 실적, 인력 등에 관한 각종 증빙서류 및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 첨부자료는 별도파일로 제출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우리 공사는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입증불가 또는 허위작성사실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제 출 서 류 목 록

| 구 분 | 제 출 서 류 | 부수 | 비고 | 담당 |
|------------------|--|-----|-------------------------------------|-----------------------|
| ①입찰참가자 격 증명서류 | 1) 입찰참가신청서 | 1부 | 서식1 | 공통 |
| |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 1부 | 나라장터 홈페이지 | 각사 |
| | 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보험증권) | 1부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사 |
| | 4)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각사 |
|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원본대조필 | 각사 |
| | 6)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 각사 |
| | 7)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사용 시) | 1부 | | 각사 |
| |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 1부 | | 대표사 |
| ②제안서 | 1) 기술제안서 본문 | 10부 | 서식2 | 공통 |
| | 2) 증빙서류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서(기업, 인력), 경력증명서(인력), 자격증명서 사본 등) | 2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 제안서 본문과 별책으로 제본 | |
| | 3) 자체 정량평가표 | 2부 | 서식5 | |
| ③기타서류 |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1부 | 서식3 | 각사 |
| | 2) 조세포탈 관련 확인 서약서 | 1부 | 서식4 | 각사 |
| | 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1부 | 서식6 | 각사 |
| |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체 구성 시) | 1부 | 서식7 | 공통 |

※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명기하여, 인감(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 기술제안서 본문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서식2의 ‘제안서 작성 양식’ 에 따라 작성하고, 각각 무선 제본하여 제출. 그 외는 제본(무선, 스프링, 링바인딩 등)하지 않고 서류 형태로 제출

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 기준

1.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항목

| 구 분 | 평 가 항 목(배점) | 평가 방법 | 평점 만점 | 평가 결과 |
|-----------------|--|--------------|-------|----------------|
| 1. 계량 평가 (30점) | ① 전문인력 적정성 (12) - 기술분야 수행경험 (7) * 도로의 설계, 교량 설계, 타당성 조사, 기술자문 등 - 재무분야 수행경험 (3) * 투자구조, 재무분석, 자원조달, 세무 등 - 법률분야 수행경험 (2) * 투자관련 제법률, 토지보상, 투자사업 법률자문 등 ※ 발주처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증명한 문서에 따른 평가 | 정량 평가 주1) | 12 | |
| | ② 신청기업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제출된 실적증명서에 따른 평가 | | 10 | |
| | ③ 신청기업의 경영상태 (8)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 | 8 | |
| 2. 비계량 평가 (70점) | ① 과업지시서 이해도 (10) - 대상사업 및 시장, 사업성과 목표 및 과업의 이해도 | 정성 평가 주2) | 10 | 1×【 】 = () |
| | ② 과업 수행 내용 I (30) -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과업성과 도출 방향의 적정성 - 과업관리방안의 적정성 | | 30 | 3×【 】 = () |
| | ③ 과업 수행 내용 II (10) -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독창적 아이디어 및 방안 | | 10 | 1×【 】 = () |
| | ④ 과업 수행 계획(20) -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과업수행 조직 및 전문가 투입계획 적정성 | | 20 | 2×【 】 = () |

※ 【 】에는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채점(10/9/8/7/6), ()에는 가중치를 곱하여 세부항목별 점수 기재

주1) 계량평가(정량 평가) 세부 평가기준

① 전문인력 적정성

가. 분야별(기술, 재무, 법률) 책임연구원의 자격 기준

| 구 분 | 자격 기준 |
|---------|--|
| 책 임 연구원 | 해당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박사, 기술사, 회계사, 변호사,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 * 분야별 책임연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 및 학위 사본, 경력증명서) 제출
- * 분야별 책임연구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 제외

나. 분야별(기술, 재무, 법률) 책임연구원의 용역수행실적

| 구 분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 × 100% |
| 70%이상 100%미만 | 배점 × 90% |
| 40%이상 70%미만 | 배점 × 80% |
| 40%미만 | 배점 × 70% |

- * 용역수행실적 인정 범위
 - 법률, 재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국내외 교통인프라(공항, 항만, 철도, 도로)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타 유사용역 수행 실적
 - 기술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국내외 도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마스터 플랜 및 기타 유사용역수행 실적
-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적용
- * **용역수행 실적규모(10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실적 사업비 합이 본 사업예산인 경우**
- * 발주처에서 컨설팅 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용역을 발주하여 컨설턴트가 업무를 수행하고 감독업무를 수행한 사업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참여인력의 실적은 '실적관리협회 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평가. 단, 상기 경력증명서가 없는 기술자에 한해 '대표이사가 날인한 이력서', '발주처 등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평가할수 있음
- *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등 수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실적 불인정

※ 입찰자의 해당 인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자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② 신청기업의 용역수행실적

| 구 분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 × 100% |
| 70%이상 100%미만 | 배점 × 90% |
| 40%이상 70%미만 | 배점 × 80% |
| 40%미만 | 배점 × 70% |

- * 용역수행실적 인정 범위
 - 법률, 재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국내외 교통인프라(공항, 항만, 철도, 도로)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타 유사용역 수행 실적
 - 기술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국내외 도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마스터 플랜 및 기타 유사용역수행 실적
-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적용
- * 신청기업이 공동수급일 경우 각 참여사 지분율을 해당 기업의 실적과 곱한 후 합산
- * **용역수행 실적규모(10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실적 사업비 합이 본 사업예산인 경우**
- * 외부로부터 과업을 수주하여 직접 수행한 실적만 인정
- * 복수의 분야가 복합된 실적의 경우 증명서 등을 통해 각 분야에 해당하는 용역 금액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

③ 신청기업의 경영상태

| 회사채 | 신용평가등급 | | 평점 |
|--|-----------------------------|--|-----------|
|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 ×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 × 90% |
| B+, B0, B- | B- | B+, B0, B- | 배점 × 8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 × 70%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함
- * 신용평가등급은 가장 최근의 등급과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다수를 제출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각 참여사 지분율을 해당 기업의 점수와 곱한 후 합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 적용함

주2) 비계량평가(정성 평가)

- 용역수행 능력·적합성 등의 정도에 따라 아래 점수비율로 평가
(매우우수 : ⑩, 우수 : ⑨, 보통 : ⑧, 미흡 : ⑦, 매우미흡 : ⑥)

기술능력평가 점수산정

- 점수 : 기술능력평가 득점 × 90%
- * 기술능력평가는 업체별로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평가(단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 모든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함)

2. 가격평가 및 배점한도(10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여기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규정에 따름